

##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1년 3월 18일 규칙 제688호  
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 
(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19년 2월 11일 규칙 제84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신고의 방법)**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증언,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.

**제3조(신고사항의 처리 등)** 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제2조에 따른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·고소·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

2.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,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

##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위하여 비밀번호(국문·영문·숫자를 8자 이내로 함)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.

⑤ 부조리행위의 신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,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 제12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.

**제4조(허위신고)** 시장은 신고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인사·신분상 불이익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5조(포상금지급절차)** 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,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

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(포상금의 지급방법)**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,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신고자가 특별한 지급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 12. 20 규칙 제702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

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「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기획감사관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⑳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9. 2. 11 규칙 제84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「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기획감사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⑪ 까지 생략



[별지 제2호서식]

공직자 부조리 신고접수 비밀번호 관리대장

접수번호	접수일자	신 고 자			비밀번호	비 고
		주 소	생년월일	성 명		

※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번호(국문·영문·숫자를 8자 이내로 함)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함

[별지 제3호서식]

###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 고 자 비밀번호	관련공무원 인적사항			비위 내용	증거 자료	사실조사 결 과	포 상 금 지급심의		포 상 금 지급일자	비고
			소속	직급 (직위)	성명				가·부	금액		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9. 2. 11>

**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요구서**

지 급 대 상 자 비 밀 번 호	
관 련 공 무 원	소 속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 급(직위)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 명 :
비 위 신 고 내 용 및 사 실 조 사 결 과	
포 상 금 지 급 기 준	
추 천 자 의 견	
<p>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추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천 인 : 오산시 감사담당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>오 산 시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</p>	

[별지 제5호서식]

##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의결서

지급대상자 비밀번호															
신고내용 (구체적인 증거 여부)															
관련공무원	소속 :      직급(직위) :      성명 :														
관련공무원 조치 계획															
사실조사 결과															
지급대상금액															
<p>위와 같이 심의함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>오산시공직심사위원회 (청인)</p> <table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padding-right: 50px;">위원장</td> <td>○○○ 서명</td> </tr> <tr> <td>부위원장</td> <td>○○○ 서명</td> </tr> <tr> <td>위원</td> <td>○○○ 서명</td> </tr> <tr> <td>위원</td> <td>○○○ 서명</td> </tr> <tr> <td>위원</td> <td>○○○ 서명</td> </tr> <tr> <td>위원</td> <td>○○○ 서명</td> </tr> <tr> <td>위원</td> <td>○○○ 서명</td> </tr> </table>		위원장	○○○ 서명	부위원장	○○○ 서명	위원	○○○ 서명	위원	○○○ 서명	위원	○○○ 서명	위원	○○○ 서명	위원	○○○ 서명
위원장	○○○ 서명														
부위원장	○○○ 서명														
위원	○○○ 서명														
위원	○○○ 서명														
위원	○○○ 서명														
위원	○○○ 서명														
위원	○○○ 서명														